

특별정비구역 분할,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동의자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	
(전화번호:)				

소유권 현 황	토 지 (총 필지)	소재지	공유 여부	면적(㎡)
	건 축 물 (종류: 상가, 아파트 등)	소재지	허가 유무	동 수
	지 상 권 (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 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)	설 정 토 지		지상권의 내용
	등기상 건축물 지분 (면적 ㎡)		등기상 대지 지분 (면적 ㎡)	

특별정비구역	[]분할 []통합 []결합
특별정비에정구역	[]결합

동의 내용	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	
	위치	
	면적	㎡
	※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,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·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.	

본인은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·제18조의4제1항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분할, 통합 및 결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
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(지장날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첨부서류	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(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,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) 사본 1부. 다만,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)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.
------	--

유의사항

작성 시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, 사잇도장)을 해야 합니다.